

3.1.17 학생지도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20. 05. 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생생활에 관한 지도, 학생단체활동, 학생복지 및 학생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5.29.>

제2조 (조직) 본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당연직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8명 이내로 추천하여 조직한다.

제3조 (임원) ①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제4조 (소집) 본 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5조 (심의)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의 생활지도
2. 학생지도 방침 수립
3. 학생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05.29.>
4. 학생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5.29.>
5.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5.29.>
6. 학생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5.29.>
7. 기타 학생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신설 2020.05.29.>

제6조 (사무)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